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21	. / (총 2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혜 은		044-202-3575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3617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노 혜 원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이 승 훈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송 준 헌		044-202-3810
방역총괄팀	담 당 자	강 준 혁		044-202-3811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33-7660
질병관리과	담 당 자	정 진 숙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건 작	031-8008-5422
대전광역시	과 장	원 방 연		042-270-4860
위생안전과	담 당 자	김 혜 경		042-270-4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3155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3615
법무부	팀 장	박 상 욱		02-2110-4090
이민정보과	담 당 자	이 철 민		02-2110-4091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동 교		044-202-3730
해외입국관리팀	담 당 자	박 성 원		044-202-37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혹시 추가적으로 지정할 고위험시설은 없는지 미리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선정,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 또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라고 고용부, 농식품부에 주문하였다.
 - 아울러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 등음식점에서의 전파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감염을 예방하면서도음식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식약처, 농식품부 등에 지시하였다.
 - 한편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한 승객이 폭행 등 난동을 일으키는 사건과 관련,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찰청 등에서는 엄중한 수사와 처벌 방침을 국민께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
 - 끝으로 지역사회와 해외유입 모두 상황이 엄중한데,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7일(일)부터 6월 20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46.7명으로 이전 2주간(5. 24.~6. 6.)의 39.6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월 24일 ~ 6월 6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9.6명
지역사회	33.6명
집단 발생¹⁾ (신규 기준)	17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51% (45/554)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6월 7일 ~ 6월 20일		
46.7명		
36.8명		
12건		
10.6% (69/654)		
80% 미만		

 \Rightarrow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전파 양상에 있어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각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주 들어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며,











-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6월 3주에는 확진자 중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설명했다.
 -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1.7% → 6월 3주 50% (약 5배 증가), 위중·중증 환자 6월 2일 8명 → 6월 20일 현재 34명 (약 4배 증가)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5월 29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사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13일 ~6월 14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9%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① (휴대폰 이동량)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0.8% 증가(약 26.8만 건)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8%하락(약 25.9만 건)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② (카드 매출)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0.5% 증가 (58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4%하락 (607억 원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❸ (수도권 교통이용)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5.5% 증가(111.4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5%하락(10.4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 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의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
 -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환자 발생이 금주 들어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및 충청권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최근의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룸살롱 등 유흥시설(1,883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함바식당을 포함한 건설공사장(2,484개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배부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하였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 경기도는 6월 20일부터 다단계판매업체 등 방문판매업체 4,849개소를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미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1,177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였다.











- (대전광역시) 대전에서는 6월 15일 이후에만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6월 20일부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구 공공이용시설 총 150개소를 잠정폐쇄하였고, 지역아동센터(142개소), 청소년이용시설(28개소), 시민이용시설(3개소) 등 총 425개소를 휴관하는 등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4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 계획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일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발굴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주요 지표		위 험 도	
구표 시표	낮음(0점)	보통(1점)	높음(2점)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밀집도) 이용자간 밀집정도	대체로 거리 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 두기 가능	때문 게 뒤 불능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수	소규모	ਨ ਜਟ	대규모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 그 결과 ①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②유통물류센터, ③대형 학원, ④뷔페 등 4개 시설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 고위험시설 목록 >

시설 유형	대상 시설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식점	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붙임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참조)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 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아울러 4개 고위험시설별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











○ 전국의 4개 고위험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는 6월 23일(화) 18시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요약) >

< 고위엄시설 액심 망역수식 (요약) >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사항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마스크 착용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근로자 수칙)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 * 교육부 지침 참고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	■마스크 착용		
뷔페	■ 영업 전/후 시설 소독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마스크 착용 (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u>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u>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보건복지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하여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 그리고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점검 실시

5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체류자격 현황을 보고하였다.
 - 해외입국자는 비자심사 강화조치(4.13) 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다.
 - 지난 1주간(6.12. ~ 6.18.)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 대비 8%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외국인은 2%가 증가한 1,048명이 입국하였다.
 - * 하루 평균 입국자 : 내국인(2,648 \rightarrow 2,452명) / 외국인(1,023 \rightarrow 1,048명)











-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 대비 5%가 증가하였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 * 하루 평균 외국인 입국자 : 단기(340 → 358명) / 장기(685 → 690명)
-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며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 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 대다수 국가들의 국가 봉쇄조치 완화와 선원, 해외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외국인 입국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현재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 시설에서 격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 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하고 있다.
 - * (자가격리, 6.20일 기준) 장기체류외국인, 내국인 28,590명 관리 중 (시설격리, 6.20일 기준) 7개 임시생활시설에 2,428객실 운영, 단기체류외국인 1,866명 입소 중











-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시설격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으로부터 해외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어,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 특히 최근 해외입국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는 이러한 사전 방역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 외교· 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가 일시 중지된다.
- 또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發) 입국자 중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해외입국자에 대한 촘촘한 방역 조치로 해외 입국 확진자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면서
-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이 해외입국자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붙임 > 1.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 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 3. 시설별 위험도 평가 결과
 - 4.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마스크 착용법
 -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맹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밀폐도	- 자연환기 (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ㅎㅂ과 미지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m²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m²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의자·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
	밀폐도	- 자연환기 (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유통물류센터	밀집도, 군집도	-작업장 및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공간 내 근로자 간 간격 유지(최소 1m)
대형학원 (300인 이상)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 전체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교실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수업공간 내 책상 간 간격 유지(최소 1m)
뷔페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m²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m²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











시설별 위험도 평가 결과

구 분	Ŋ	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감성주점,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고위험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뷔페	
	학원(300인 미만)	멀티방·DVD방	
	콜센터	공판장·위판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게임장·오락실	건설현장 구내식당	
	일반주점	기업 내 구내식당	
	워터파크	국제·연안여객선	
	종교시설	고시원	
중위험	결혼식장(실내)	견본주택	
	공연장(뮤지컬, 연극)	야구장,축구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물류창고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지노업장	카페	
	키즈카페	장례식장	
	놀이공원		
	쇼핑몰(백화점, 아울렛 등)	낚시어선업	
	이·미용실, 네일숍, 마사지숍	고속도로휴게소	
	도서관(열람실)	스터디카페	
	숙박업소	안마원·안마시술소	
저위험	박물관·미술관	슈퍼마켓	
11110	소매점(안경점, 문구점, 옷가게 등)	레저선박	
	식당(배달, 포장)	산후조리원	
	도서관(대여)	수산물냉동·냉장시설	
	야영장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